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가. 유기성 폐기물(하수찌꺼기, 음식물폐기물, 분뇨)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및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유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필요함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 처리의 통합화·지하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향상하고 에너지 생산형 자원순환 시설 건설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함

나.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 (1) 사업명 :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 (2) 총사업비 : 1,767억원
(국 975(55%), 도 73(4%), 시 146(8%), 칠곡 25(1%), 민간 548(31%))

※ 사업비 등은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채원협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위치 : 칠곡군 석적읍 중리 일원(구미하수처리장 내)

(4) 사업량 : 475톤/일

구분	합계	하수찌꺼기	음식물폐기물	분뇨
계	475	255	190	30
구미	410	220	160	30
칠곡	65	35	30	-

(5) 사업기간 : 48개월(시운전 10개월 포함)

(6) 운영기간 : 준공일로부터 20년

※ 사업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검토결과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조사기간 : 2022. 6. 22 ~ 2023. 1. 18
- 검토결과 : 사업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VFM(민자적격성) : 1.64%(VFM > 0 이상 적격성 확보)]

나. 사업의 필요성

(1) 시설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및 처리용량 부족으로 유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필요

(2)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22.12.30)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 및 관리 필요

※ 생산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 부과 예정(시행일 : '25. 1. 1)

다. 추진현황

- 2022. 2. 14 : 시범사업 공모 선정(환경부)
- 2022. 3. 25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 2022. 8. 24 :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기획재정부)
- 2023. 1. 18 : 제안서 타당성 검토 완료(공공투자관리센터)

라. 향후계획

- 2023. 4 : 시의회 동의안 의결
- 2023. 6 : 제3자 제안공고
- 2023. 10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24. 5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24. 12 : 실시계획 승인
- 2025. 1 : 공사 착공
- 2028. 12 : 공사 준공

마. 위치도 및 조감도

○ 위치도



○ 조감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

나. 예산조치 : 2023년 ~ 준공시까지 예산편성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에 따른 세출 발생
-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3년도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2. 비용추계의 전제

구 분	금액(백만원)
총사업비	176,718
조사비	141
설계비	5,702
공사비	151,076
부대비	9,425
제세공과금	8,638
영업준비금	1,736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국고보조금	-	22,024	31,394	26,197	17,880	97,495
	○ 도비보조금	-	1,652	2,355	1,965	1,340	7,312
	○ 민간	8,741	10,435	14,065	11,835	9,773	54,849
	○ 칠곡	-	552	787	657	449	2,445
	소계(a)	8,741	34,663	48,601	40,654	29,442	162,101
세출	○ 공사비 등	8,741	37,965	53,308	44,582	32,122	176,718
	소계(b)	8,741	37,965	53,308	44,582	32,122	176,718
□ 총 비용(a-b)		-	3,302	4,707	3,928	2,680	14,617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22,024	31,394	26,197	17,880	97,495
도 비		-	1,652	2,355	1,965	1,340	7,312
시 비		-	3,302	4,707	3,928	2,680	14,617
민 간		8,741	10,435	14,065	11,835	9,773	54,849
기 타(칠곡)		-	552	787	657	449	2,445
합 계		8,741	37,965	53,308	44,582	32,122	176,718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재원협의 등에 따라 재정소
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하수과 하수시설팀 박현정(☎452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소 관 부 서		하수과
입 안 자	과 장	이 윤 식
	팀 장	김 종 덕
	담 당 자	박 현 정 (480-4524)